

- 구미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년 12월 20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12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00년 12월 22일

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도시건설국장 천 동 성

나. 제안이유

-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과 지역·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건축법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건축법 및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건축법 개정에 따른 정비

- 현장 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- 정비

(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 및 검사는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하도록 검사 강화)

- 현장 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- 정비

(현장조사·검사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의 지급 범위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서 수수료의 범위안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정 “당초 10분의 3에서 **10분의 5**”로 변경)

- 대지안의 조경식재기준 - 정비
- 용적을 - 도시계획법으로 이관 및 일부정비
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- 정비
- 이행강제금의 부과 - 신설

○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삭제

- 지역안에서의 건축물(제16조 ~ 제28조) - 삭제
- 지구안의 건축물(제29조 ~ 제45조) - 삭제
- 도시계획구역안의 건폐율 - 삭제
- 도시계획구역안의 용적을 - 삭제
- 도시설계 등 (제58조 ~ 제59조) - 삭제

라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건축법, 건축법시행령, 건축법시행규칙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윤 구

- 이 개정 조례안은 '2000. 1. 28일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종전 건축조례로 규정하던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과 도시계획구역 안의 건폐율·용적율에 관한 사항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으로써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등 38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,
-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함으로써 현장확인시 발생될 부조리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한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설 및 개정된 조례의 내용이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됨이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 의결